

2019년 구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,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구리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.

2019년 06월 27일

구 리 시



1. 고 시 명 : 2019년 구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 2. 대 상 지 : 1)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151-2번지 일원
2)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7-2번지 일원 (붙임 1 참조)
 3. 지정사유 :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
 4. 고시일자 : 2019. 06. 27.
 5.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 - 가.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 - 나.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 6. 열람 및 문의사항
 - 가.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구리시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 공원녹지과(☎031-550-226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록 1부
2.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. 끝.